

『복무규정』 일부 개정(안)

2018. 11. 2.

문서번호	인재경영팀-5641	선임	인재경영 팀장	지원본부 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8.11.12.	11/02 박주은	11/02 신현정	11/02 권중석	전결11/12 최경란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선임	경영지원 팀장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(1177)호			11/02 손현정	11/02 강경남		

추진근거	-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
	경영지원팀	규정개정협약	규정개정
사 업 비			

※ 문서내용을 위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세요.

서울디자인재단 (인재경영팀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	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
『복무규정』일부 개정(안)

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개정(시행일 2018.05.29.),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』 및 재단 단체협약 등을 준용하여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일·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1. 개정사유

- 『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 7호』에 의거하여 “1주”에 대한 정의 명시.
- 『근로기준법 제70조 2호』에 의거하여 임신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휴일근로제한 명시.
-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(육아휴직의 적용 제외)』에 의거 육아휴직 적용제외자를 계속근로 기간 6개월 미만 직원으로 축소(1년⇒6개월)
-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(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』에 의거 휴가기간 계산의 명확화

2. 주요골자

- 『복무규정 제13조(근무시간)』중 ““1주”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” 신설함
- 『복무규정 제15조(초과근무)』중 18세 미만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무 금지를 신설함
- 『복무규정 제26조(육아휴직) ②항』중 육아휴직 신청 예외 근로자를 “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”로 개정함
- 『복무규정 제34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』을 “휴가기간 중의 휴일”로 개정하여 휴가기간 계산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개정내용

- 『복무규정』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『복무규정 제13조(근무시간)』중 ““1주”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”를 신설함

- 『복무규정 제15조(초과근무)』중 “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.”를 신설함
- 『복무규정 제26조(육아휴직) ②항 1호』중 “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이하 “휴직 개시예정일”이라 한다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”를 “6개월 미만인 근로자”로 개정함
- 『복무규정 제34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』을 “휴가기간중의 휴일”로 개정함.

4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개정
- 시 행 일 :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[별 지] 1. 신·구조문 대비표

[붙 임] 1. 『복무규정』개정(안) 전문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근무시간)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3조(근무시간) (생략) ④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</p>
<p>제15조(초과근무)</p> <p>① 재단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 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,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단,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산부 직원의 연장근무, 야간근무, 휴일근무 적용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3.10.24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초과근무)</p> <p>① 재단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 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,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단,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산부 직원의 연장근무, 야간근무, 휴일근무 적용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3.10.24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③ 재단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. 다만,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(③->④변경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26조(육아휴직) ② 단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중략)</p> <p>1.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이하 "휴직개시 예정일"이라 한다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</p>	<p>제26조(육아휴직) ② 단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중략)</p> <p>1.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이하 "휴직개시 예정일"이라 한다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</p>
<p>제34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4조(휴가기간 중의 휴일)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